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86
----------	-----

2024. 6. 24.(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이정범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24년 5월 30일

다. 회부일자: 2024년 5월 31일

라. 상정일자: 2024년 6월 11일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이정범 의원)

가. 제안이유

○ 본 개정 조례안은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여 다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가정의 자녀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출생률에 따른 학령인구감소와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다자녀 학생’의 정의를 셋째에서 둘째로 변경함(안 제2조제1호)
-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신설)
-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에 포함해야 할 세부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2항)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원호)

가. 조례 제정 이유

- 현재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며(2021년 0.81명 → 2022년 0.78명 → 2023년 0.72명), 초저출산·학령인구 감소·인구절벽·지역소멸 위기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직면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12월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개선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부터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하여, 양육·교육·돌봄·주거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충북의 경우 전국적인 출생아 수 감소 추세와 달리 2023년 7,693명이 출생해 2022년 대비 1.5% 증가했지만, 올해 1분기 충북 출생아 수는 1,913명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51명(-7.3%) 감소

하여 전국 평균 감소율 -6.2%보다 높았고, 이 같은 감소 추세는 충북의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제천, 단양, 괴산, 보은, 옥천, 영동 6개 지역의 인구감소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충청북도교육청은 현재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및 졸업앨범비’를 지원하고 있음

다자녀 학생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기준	비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졸업앨범비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충청북도교육청 최근 4년 다자녀 학생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지원항목	연도	지원인원	지원예산	비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2021	5,486	562,550	코로나19 영향
	2022	5,405	1,621,500	
	2023	5,461	1,638,300	
	2024	5,461(예상)	1,638,300	
졸업앨범비	2021	0	0	미지원
	2022	0	0	미지원
	2023	2,373	166,110	
	2024	2,373(예상)	166,110	

자료: 충청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

- 본 개정 조례안은 충북의 현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 실태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 및 교육비 경감지원 정책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자녀에 대한 정의와 지원 대상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여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출생률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초저출산·학령인구 감소·인구 절벽·지역소멸 위기 상황과 2명 이상 자녀를 다자녀 가정으로 규정하여 지원 혜택을 확대하고 있는 정부 정책 및 관련 상위법령²³⁾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 ‘다자녀 학생’의 정의를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으로 확대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개정함
 -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 12. 15)에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개선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2021년 9월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확대 발표한 후, 관련 법 개정과 함께 학자금·등록금 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주택공급 우선 및 매입임대 보증금·전세 임대료 완화, 교통 및 문화시설 이용 할인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2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보육의 우선제공)제3항제4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로 규정되어 있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 또한 이 같은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자녀를 2자녀로 규정하는 조례를 제·개정해 나가는 추세²⁴⁾임
- 따라서 다자녀 학생에 대한 정의를 3자녀에서 2자녀로 개정하는 것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방안에 부합하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하다 사료됨

- 안 제3조에 다자녀 가정 지원 시책의 수립·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한 것은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과 지역 사회 학령인구 감소·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적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대처 노력을 강조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 사항이라 판단되며,
- 안 제5조에는 지원계획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세부 항목을 명시함으로써 다자녀 학생 지원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료됨
- 부칙 규정에 본 조례안의 시행을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것은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확보와 시행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속되고 있는 합계출산율 감소로 인한 지방 인구소멸 위기의 현실화 우려 속에 정부와 지방자치가 범정부·범국가적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다자녀 가정의 양육 및 교육비 지원

24) 첨부자료 1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 기조에 맞춰 충청북도교육청의 다자녀 가정 학생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고 다자녀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시의적으로도 적절한 입법 조치라 판단됨

- 또한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인 조문 체계와 개정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으며,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됨
- 다만, 충청북도교육청은 그동안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을 세자녀 기준에 따라 지원해 왔으므로, 개정된 조례 규정에 따라 둘째 자녀를 기준으로 한 다자녀 지원 대상에 대한 실태파악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시행 계획 및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은 지자체에서도 중요한 정책인 만큼 도교육청 유관 부서 간 협업뿐만 아니라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예산의 중복이나 형평성 및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지원 사업 선정과 체계적인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첨부자료 1]

타 시·도 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현황

순	시도	조례명	다자녀 정의	공포일자	제정·개정
1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23. 6. 2.	일부개정
2	경기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23. 12. 22.	일부개정
3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산 또는 입양 재혼으로 두 자녀 이상 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인 학생	'23. 11. 9.	일부개정
4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인 학생	'23. 4. 10.	일부개정
5	대구	대구광역시교육청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18. 1. 2.	제정
6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23. 4. 28.	일부개정
7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인 학생	'23. 10. 11.	제정
8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24. 1. 11.	제정
9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23. 2. 28.	제정
10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17. 4. 27.	제정
11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22. 11. 7.	일부개정
12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19세 미만인 학생	'23. 8. 3.	일부개정
13	전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23. 11. 10.	타법개정
14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21. 11. 23.	일부개정
15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22. 2. 10.	일부개정
16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18. 4. 20.	제정

자료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재편집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생 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셋 이상”을 “둘 이상”으로, “셋째”를 “둘째”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고, 제4조를 제6조로 하며,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교육감”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교육감은 매년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지원 사업
3. 지원대상 선정
4. 재원확보 및 지원 방법
5. 실태조사
6. 그 밖에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종전의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u>셋 이상</u>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u>셋째</u> 이후 학생을 말한다. 2. · 3.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 <u>둘 이상</u> ----- ----- <u>둘째</u> ----- -----. 2. · 3. (현행과 같음)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4조(적용범위) ----- 교육감 ----- ----- ----- -----.

1. ~ 3. (생 략) <u>제4조 (생 략)</u> <u>제5조(지원계획 수립) 교육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u> <u><신 설></u> <u>제6조 (생 략)</u> <u>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교육비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u>	1. ~ 3. (현행과 같음) <u>제6조 (현행 제4조와 같음)</u> <u>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u> <u>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u> <u>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u> <u>2. 지원 사업</u> <u>3. 지원대상 선정</u> <u>4. 재원확보 및 지원 방법</u> <u>5. 실태조사</u> <u>6. 그 밖에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u> <u>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u> <u>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u>
---	---

관 계 법 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22. 6. 15.] [법률 제185805호, 2021. 12. 14., 일부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① 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2. 5. 23.>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다자녀 기준(셋째 자녀 → 둘째 자녀) 완화를 통한 다자녀 교육비 지원대상 확대 및 교육 지원 강화
- 다자녀 교육비 지원대상 확대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지속적인 출생률 하락에 따른 학령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

2. 비용 발생 요인

- 다자녀 기준 확대 적용으로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 및 졸업앨범비 지원 사업의 예산 소요액 증가

3. 관련조문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18.4.20.제정)

4. 비용 추계결과

- 추계의 전제

가. '24.4.1.기준,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중 둘째 이후 자녀에 해당하는 학생 현황 전수조사를 통한 학생 수 파악

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소요액 산출방법: 600천원×학생 수×12%*

* 최근 3년간('21~'23년) 방과후학교 유상 참여율 평균: 12%

다. 졸업앨범비 지원 소요액 산출방법: 70천원×학생 수×13%*

* '23년 다자녀 학생 졸업앨범 신청 비율: 13%

○ 추계 결과

가. '24년 둘째 이후 자녀 학생 현황 조사 결과(재정복지과-12316, 2024.4.19.)

(단위: 명, %)

구 분	둘 째	셋 째	넷 째	다섯째	여섯째 이상	합 계
초등학교	26,301	7,495	937	166	61	34,960 (48.4)
중학교	14,691	4,286	538	87	39	19,641 (27.2)
고등학교	12,888	3,953	491	65	25	17,422 (24.1)
특수학교	133	51	9	2	2	197 (0.3)
각종학교	21	5	0	0	0	26 (0.0)
합 계	54,034 (74.8)	15,790 (21.9)	1,975 (2.7)	320 (0.4)	127 (0.2)	72,246 (100)

나. 둘째 자녀 지원 시 추가소요액: 4,382,080천원

- 자유수강권: 600천원×6,484명(54,034명×12%)=3,890,400천원
- 졸업앨범비: 70천원×7,024명(54,034명×13%)=491,680천원

[참고] '24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본예산 기편성액: 1,514,850천원

1.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셋째 이후): 1,348,740천원(2,248명)
2. 졸업앨범비 지원(셋째 이후): 166,110천원(2,373명)

○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0	0	0	0	0	0
세 출		4,382,080	4,338,259	4,294,877	4,251,928	4,209,409	21,476,55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3,890,400	3,851,496	3,812,981	3,774,851	3,737,103	19,066,831
졸업앨범비		491,680	486,763	481,896	477,077	472,306	2,409,722
재원 조달		4,382,080	4,338,259	4,294,877	4,251,928	4,209,409	21,476,553
의 존 재 원	소 계	4,382,080	4,338,259	4,294,877	4,251,928	4,209,409	21,476,553
	보통교부금	4,382,080	4,338,259	4,294,877	4,251,928	4,209,409	21,476,553
자 체 수 입	소 계	0	0	0	0	0	0
	자체수입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기 타 (차입금, 민자, 예 비비 등)		0	0	0	0	0	0

※ 예산소요액 매년 1%* 감소 예상

* 최근 3년간('21~'23년) 학생 수 감소율 평균: 1%